

#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우재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4.

발의자 : 우재준 · 김태호 · 이성권

서천호 · 박충권 · 김소희

김용태 · 이달희 · 배준영

김상훈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,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일임하고 있음.

그런데 각 지자체에 위치한 토양오염우려대상시설 현황 및 영업 여부 파악, 상시측정 진행 여부, 상습적 측정 미진행 시설 등 토양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와 관리에 대한 권한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어 토양오염을 관리, 예방해야 할 주체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 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하여야 하는 대상 항목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, 토양오염검사 진행 여부를 추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다 원

활하게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5항 신설, 제26조의3제1항제1호, 제26조의3제1항제3호 신설).

##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진행 중인 토양오염검사 현황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6조의3제1항제1호 중 “설치 현황”을 “설치·운영 현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3.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행 중인 토양오염검사 현황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토양오염검사) ① ~ ④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13조(토양오염검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진행 중인 토양오염검사 현황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 <u>⑥·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</u>
제26조의3(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후에 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<u>설치 현황</u> 2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26조의3(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<u>설치·운영 현황</u> 2. (현행과 같음) <u>3.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행 중인 토양오염검사 현황</u>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3. (생 략) ② (생 략)	